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1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06,700,000	15,201,000
일반회계	425,000,000	12,750,000
특별회계	81,700,000	2,451,000
공기업특별회계	12,900,000	387,000
공기업특별회계	12,900,000	387,000
기타특별회계	68,800,000	2,064,000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2,200,000	366,000
수질개선특별회계	2,247,000	67,410
의료보호비특별회계	2,110,000	63,300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	900,000	27,000
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	2,110,000	63,300
주택사업특별회계	730,000	21,900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470,000	14,100
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800,000	54,000
치수사업특별회계	3,650,000	109,500
주차장운영특별회계	1,550,000	46,500
대지보상특별회계	1,000,000	30,000
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	33,000	990
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40,000,000	1,20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 와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21,45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